

인천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1037
----------	------

발의년월일 : 2010. 3. 24

발 의 자 : 이명숙·정종섭 의원
(찬성자 4인)

□ 제안이유

- 가. 2000년 시행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한 자활사업은 기초생활 보장 대상자 중 조건부 수급자, 일반수급자(희망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일을 통한 빈곤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복지사업으로 시행되어 왔음.
- 나. 그러나 그 취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의 어려움, 자활 사업에 대한 법·제도적 지원책 부족 및 광역자치단체의 역할 불분명과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과중한 역할 부담, 실질적인 지원 부족 등으로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마련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음.
- 다. 이에 인천광역시의 자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 하여, 기초자치단체가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 기반조성과 광역규모의 사업지원, 시와 군·구간의 사업 연계와 조정역할을 강화하고 자활사업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저소득층의 빈곤해결과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시장은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자활지원 위원회’를 설치하고 자활지원계획, 자활근로사업단 및 자활공동체 설치·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되 인천광역시사회 복지위원회가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제5조)

- 나. 시장은 효과적인 자활사업 추진을 위해 인천광역시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 다. 시장은 자활사업실시기관, 자활근로사업단, 자활공동체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라.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자활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인천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 및 운영,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자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활사업”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
2. “광역자활센터”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인천광역시 단위의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 설립된 센터를 말한다.
3. “지역자활센터”라 함은 법이 규정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 설립된 사회복지법인등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자활근로사업단”이라 함은 보장기관 혹은 자활사업 수행기관에 의해 자활사업을 목적으로 구성된 사업단을 말한다.
5. “자활공동체”라 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공동체를 말한다.
6. “자활사업실시기관”이라 함은 영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자활사업을 행하는 공공 또는 민간기관·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활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자활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인천광역시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자활근로사업단 및 자활공동체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자활사업지원 항목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자활근로사업단 및 자활공동체에서 생산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우선 구매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시장은 「인천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로 하여금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천광역시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당해 년도 및 다음 년도 자활사업 수요와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2. 당해 년도 및 다음 년도 자활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다음 년도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7조(지원) 시장은 자활사업실시기관, 자활근로사업단, 자활공동체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관계법령에 따른 국·공유지 우선 임대 및 임대료 지원
3. 시장이 시행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조달구매 시 자활 생산품의 우선 구매
5. 그밖에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제8조(광역 및 지역자활센터) ① 시장은 자활사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받은 광역 및 지역자활센터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광역 및 지역자활센터의 운영 및 자활사업에 필요한 연구·조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자활사업 지원) 시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활사업실시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4.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지도
5. 자활공동체의 설립·운영지원
6. 그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검토와 발체사항

관계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조(정의) - 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 - 제18조(자활공동체) -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 <input type="checkbox"/>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0조(자활에 필요한 사업) - 제12조(자활사업의 위탁시행) - 제22조(지역자활센터의 사업) <input type="checkbox"/>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7조(지역자활센터의 지정) - 제31조(지원대상 자활공동체)
관련법규 정비대상	
관련자료	

관계법령 발췌사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수급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3. "수급품"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수급자에게 급여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부양의무자"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6. "최저생계비"라 함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을 말한다.
7. "개별가구"라 함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 부합여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소득인정액"이라 함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9.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이라 함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은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과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소 등을 반영하여야 하고, 실제소득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소득평가액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0.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라 함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재산범위·재산가액의 산정기준 및 소득환산율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1.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수급권자(제5조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자를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의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이하 "법인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경험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4.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지도
5. 자활공동체의 설립·운영지원
6. 기타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② 보장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행할 수 있다.

1. 지역자활센터의 설립·운영비용 또는 제1항 각호의 사업수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국·공유재산의 무상임대
3.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③ 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지역자활센터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효과적인 자활지원과 지역자활센터의 발전을 공동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자활센터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활센터의 신청·지정 및 취소절차와 평가 기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자활공동체)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공동체(이하 "공동체"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공동체는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2인 이상의 사업자로 설립한다.

③ 보장기관은 공동체에게 직접 또는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국·공유지 우선 임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시 공동체 생산품의 우선 구매
5. 기타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④ 공동체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 ① 이 법에 의한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 수립
2.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의 결정
3. 급여기준의 결정
4. 최저생계비의 결정
5. 제1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자활기금의 적립·관리 및 사용에 관한 지침의 수립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지명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 공공부조 또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전문가로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자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재직중인 자 4인 이내
2. 공익을 대표하는 자 4인 이내
3. 관계행정기관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4인 이내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 및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지명하며 위원장은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공익을 대표하는 자
3.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는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시·도 및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과 각 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0조(자활에 필요한 사업) ① 법 제9조제5항에서 "자활에 필요한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
2.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알선 등의 제공
3. 제20조에 따른 자활근로
4.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제시하는 사업장예의 취업
5. 「고용정책 기본법」 제3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공근로사업
6.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이하 "지역자활센터"라 한다)의 사업
7.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이하 "자활공동체"라 한다)의 사업
8. 개인 또는 공동 창업
9. 근로의욕 및 능력의 유지를 위한 자원봉사
10. 기타 수급자의 자활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급여의 조건으로 자원봉사를 제시받은 조건부수급자가 그와 다른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자원봉사의 내용·기간 및 자원봉사 이행여부의 확인자 등을 고려하여 이를 생계급여의 조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의 내용 등을 변경하여 인정할 수 있다.

제12조(자활사업의 위탁시행) ① 시장·군수·구청장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자활사업을 행하는 공공 또는 민간기관·단체(이하 "자활사업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자활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조건부수급자의 수용능력 등에 관하여 미리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조건부수급자의 조건이행여부에 대한 의견 등을 포함한 자활사업 참가결과를 3월마다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이행을 중도 포기하거나 거부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지역자활센터의 사업)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기타 자활을 위한 각종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의 부업소득 향상을 위한 부업장의 설치·운영사업
2. 자활공동체 또는 부업장의 일감확보 및 판로개척을 위한 알선사업
3. 자활공동체 또는 부업장의 운영을 위한 후원의 알선사업
4.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의 자녀교육 및 보육을 위한 자활지원관의 설치·운영사업
5. 기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자활을 위한 사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7조(지역자활센터의 지정)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자활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역자활센터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정관 사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지역사회 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 및 경험 등
2.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여부
3. 지역자활센터의 지역간 균형 배치
4. 신청인 소재지의 자활지원 수요 및 저소득층 밀집 정도
5. 기타 신청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 등

제31조(지원대상 자활공동체) ①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장기관이 지원할 수 있는 자활공동체는 그 구성원중 수급자가 3분의 1이상인 자활공동체로 한다.

② 보장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던 자활공동체가 구성원의 변동으로 인하여 지원이 중단됨으로써 자활공동체의 존립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성원중 수급자가 5분의 1 이상인 자활공동체에 한하여 3년의 범위내에서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행할 수 있다.